

검 토 보 고 서

의 번	안 호	제80호
--------	--------	------

2018. 9. 10.

건 명	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(안전총괄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8. 8. 28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8. 2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업무지침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·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, 안정적 운영을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코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위탁시설(사무) :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
- 위탁기간 : 현재 2016. 04. 01. ~ 2018. 12. 31.(3년간)
: 향후 2019. 01. 01. ~ 2021. 12. 31.(3년간)
- 사업범위 :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
- 사업내용 : CCTV 관제실 24시간 영상관제업무 수행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(112신고, 119신고 등)
- 소요인원 : 20명(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5명 4조3교대)

□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,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, 「논산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안」 제17조(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)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81호
----------	------

2018. 9. 10.

건명	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안전총괄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8. 8. 28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8. 28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공정위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전담부서의 지정(안 제4조)
- 나.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(안 제17조)

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5조(국가 등의 책무),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